

#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960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: 2006. 03. 20.  
제 출 자: 고성군 수

## 1. 개정이유

-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, 임대주택법 관련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m<sup>2</sup>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으로써 자동차 관련 개정 (안 제2조, 제3조)
- 나.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법과 동법시행령에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을 분리 규정함으로써 감면조례상 조문 수정 (안 제11조)
- 다.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,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 (안 제15조, 제16조의2항, 제21조)
- 라.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대상 사업 확대 (안 제23조제1호)
- 마.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대상 재산 취득(등기)기한 폐지 (안 25조제1항)
- 바. 농업기반공사가 한국농촌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, 「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을 「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으로 수정 (안 제27조)

## 3. 참고사항

### 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 2006- 60호
- 의견 및 제출사항 없음.

### 나. 관련공문 : 세정과-11197(2005.12.21)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

## 4. 본문 : 덧붙임과 같음.

## 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

가.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

나.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.)

다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(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.)

제1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단서 중 “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”를 “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”으로 하고,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제1호 중 “「임대주택법 시행령」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”를 “「임대주택법」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”로 한다.

제15조를 삭제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토지 및 지상 건축물”을 “토지·지상 건축물·주택”으로 한다.

제21조 중 “화물터미널 및 창고용”을 “창고용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호 중 “재산세와 종합토지세”를 “재산세”로, “동조제1항제2호의2·제2호의3·제2호의4”를 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 중 “2005년12월31일까지 취득”을 “취득”으로 한다.

제27조 제목 및 본문 중 “농업기반공사”를 각각 “한국농촌공사”로 하고, 동조 본

문 중 “「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”을 “「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의료법”을 “「의료법」”으로 하고, 제8조 중 “교육기본법”을 “「교육기본법」”으로 하며, 제12조제2항 단서 중 “수도권정비계획법”을 “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”으로 하고, 제32조 중 “지방세법”을 “「지방세법」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) ① (생략) ② (생략)</p> <p>1.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</p> <p>2.~4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3조(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) ① (생략)</p> <p>1.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)</p> <p>2.~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가.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.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.)</p> <p>다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(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.)</p> <p>2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. 배기량 2,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.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(「자동차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.)</p> <p>다.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(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.)</p> <p>2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1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</b> ①(본문생략) 다만, 공동주택을 「<u>임대주택법</u>,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.</p> <p>1.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「<u>임대주택법 시행령</u>, 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(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.</p> <p>2 ~ 3. (생략)</p> <p>② (본문생략) 다만, 공동주택을 「<u>임대주택법</u>,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.</p> <p>1.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「<u>임대주택법 시행령</u>,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「공무원연금법 시행령」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(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.</p> <p>2 ~ 3. (생략)</p> <p><b>제15조(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)</b>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p>	<p><b>제11조(임대주택에 대한 감면)</b> ①(본문 현행과 같음) ----- 「<u>임대주택법</u>,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 「<u>임대주택법</u>,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본문 현행과 같음) ----- 「<u>임대주택법</u>,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 「<u>임대주택법</u>,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b>제15조(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)</b> &lt;삭제&gt;</p>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16조(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)</b>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<u>토지 및 지상 건축물</u>(그 해당부분에 한한다)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. 다만,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.</p> <p><b>제21조(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)</b>과세기준일 현재 「화물유통촉진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<u>화물터미널 및 참고용</u>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p> <p><b>제23조(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)</b> (생 략)</p> <p>1.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<u>재산세와 종합토지세</u>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(공제대상금액)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(공제대상금액)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, 동조제1항제2호의2·제2호의3·<u>제2호의4</u>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(공제대상금액)의 전액을 면제하고, 그 다음 4년간 감면대상세액(공제대상금액)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.</p> <p>2 ~4. (생 략)</p>	<p><b>제16조(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)</b>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u>토지 · 지상 건축물 · 주택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<b>제21조(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)</b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 <u>참고용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<b>제23조(외국인투자유치지원 위한 감면)</b> (현행과 같음)</p> <p>1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 <u>재산세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 <u>동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2 ~4. (현행과 같음)</p>

